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9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이순자, 김동욱, 박기열,
박운기, 박진형,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신언근,
오승록, 우형찬, 우창윤,
이복근, 이신혜, 최판술
의원(15명)

1. 제안이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휘의 정비를 통해 조문을 개정하여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나.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를 통한 조문 개정

(안 제1~4조, 제6조)

다. 상위법령 규정 내용 중 미반영된 내용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신문·복권판매대, 매점”을 “매점”으로 한다.

제1조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로 하고, “신문판매대, 복권판매
대, 매점”을 “매점”으로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
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한다.

제4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독립유공자유가족”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한다.

제5조 중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u>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u>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u>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u>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u>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u>신문판매대,</u></p>	<p>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u>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16조의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8조의2,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u>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u>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u>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u>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현행과같음>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u>매점 및 식</u></p>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생략>

[별표]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1	장애등급이 1-2 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u>의료보호</u>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u>보호대상 모자가정</u>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생략>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u>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u>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순 자